

「건축물 외벽마감재」 관련법규 개정내용 정리

건축법시행령 (제61조제2항) [2019.11.07. 시행]

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(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) [2019.11.07. 시행]

용도/규모 [영 제61조2항]		마감재료 [※]	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	난연재료	난연성능이 없는 재료
[1호] 상업지역 (근린상업 지역제외)	[가목] 바닥면적의 합계가 2,000㎡ 이상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동시설, 위락시설	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m 미만	○	○	× ³⁾
		상기 규모 외	○	× ^{1),2)}	×
	[나목] 공장(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)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 한 건축물	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m 미만	○	○	× ³⁾
		상기 규모 외	○	× ^{1),2)}	×
[2호]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			○	× ^{1),2)}	×
[3호]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		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m 미만	○	○	× ³⁾
		상기 규모 외	○	× ^{1),2)}	×
[4호]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		외벽(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 포함) 중 1층과 2층 부분	○	× ²⁾	×
		그 외 부분	세부규정이 없음에 따라 상기 1호~3호 기준에 따름		
주) 1)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: 난연재료 사용가능 2)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: 단열재는 난연재료 사용가능 3)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: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 사용가능 ※ 마감재료 : 단열재,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					

상기 표는 2019.11.07. 시행예정인 「건축물 외벽마감재」 관련 개정안을 요약정리한 내용입니다.
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(상세한 개정내용은 해당 법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